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701-2022-010447

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8 동대구역우방아이유셀 제상가동 제1층 제1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22년6월15일	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8 동대구역우방아이유셀 제상가동 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15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층 1,564.7587㎡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8	대	6651.4㎡	2022년6월15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22년6월15일	제1층 제12호	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61.2997㎡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7.6927㎡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1 소유권대지권	6651.4분의 11.7117	2022년6월2일 대지권 2022년6월15일 등기	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8 동대구역우방아이유셀 제상가동 제1층 제12호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22년6월15일 제68602호		소유자 동대구신천3동지역주택조합 2212-21592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9, 4층(신천동,대경빌딩) 대표자 운영찬 631021-*****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45, 104동 1001호 (화원이진캐스빌)
2	가압류	2023년10월10일 제122460호	2023년10월10일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(2023카단3 6818)	청구금액 금6,922,414,766 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방 170111-0352732 대구 북구 원대로 128 (침산동)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5월10일 제73407호	2024년5월9일 대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4타경110 098)	채권자 주식회사 다운플러스 170111-0569791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16, 227호 (신천동, 부띠끄시티드라마오피스텔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
기록사항 없음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09월05일 11시17분05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01-2022-010447

[집합건물]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508 동대구역우방아이유셀 제상가동 제1층 제1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동대구신천3동지역주택조합 (소유자)	2212-21592	단독소유	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29, 4층(신천동, 대경빌딩)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2	가압류	2023년10월10일 제122460호	청구금액 금6,922,414,766 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방	동대구신천 3동지역주 택조합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5월10일 제73407호	채권자 주식회사 다운플러스	동대구신천 3동지역주 택조합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